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15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이용우·김원이·이연희

이학영 • 박홍배 • 임오경

김선민 • 진선미 • 전진숙

임광현 · 황명선 · 강유정

모경종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

법률 제 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중 "사업"을 "사업과 그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	2		
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			
선을 위한 <u>사업</u>	사업과 <u>그</u>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		
	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u>사업</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